

##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목적중 “주민의 복리증진과 ”를 “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.

제9조 중 “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(도시고속화, 도심우회도로사업등)에”를 “상하수도사업과 댐주변사업, 도시도로사업(도시고속화, 도심우회도로사업등) 농촌도로사업에”로 한다.

제10조 제1항 제1호중 “상·하수도 사업”을 “상·하수도 사업 및 댐 주변사업”으로 한다.

제15조 제2항중 “보건과장다음에 “농업정책과장”을 삽입하고 “도시개발과장” 다음에 “도로과장”을 삽입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'94. 7. 11

제안자 김제근의원의외 4인

### □ 수정이유

- 용자금의 이율을 3%~10%로 할 경우 폭이 넓어 시·군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채상환 이율이 년 6% 복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율이 공채상환이율 보다는 높게 책정 되어야 하겠으며 이율이 6%이하로 운용될 경우 기금의 잠식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기금의 증대를 기하고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임.

### □ 수정 주요 골자

- 용자대상 사업주체의 재정상태 용자사업의 공공성, 수익성등을 고려하여 3%~10% 범위내에서를 삭제(안 제10조 제1항) 하고
-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 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 단체에 대하여는 6.5%~7%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"를 추가하여 현행대로 함(안 제10조 제1항 제1호)

##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 제1항중 "필요한 경우 용자대상 사업주체의 재정상태 용자사업의 공공성,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3%~10%범위내에서"를 삭제하고 "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"를 도지사가 결정한다."로 하며

동조 제1항 제1호중 : "년리 7% 다음에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 단체에 대하여는 6.5%~7%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."를 추가함.